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223번
-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출일 : 2021년 2월 5일
- 회부일 : 2021년 2월 9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을 市 출연 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담 관리·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0-1(고덕로 399)
- 사용자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$1,387.9m^2$, 건물 연면적 $7,211.5m^2$
- 사용허가 기간 : 2021.3. ~ 2026.3. (5년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'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' 운영은 서울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
-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용료 면제를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시민 학습권 제고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1.1.12.)

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 - 심의결과 : 적정('21.1.15.)

5. 검토 의견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채납 시설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(舊서울승합부지, 강동구 고덕동 210번지)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5년간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음.

〈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〉

- 소재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0-1(고덕로 399)
- 사용자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1,387.9m², 건물 연면적 7,211.5m²
- 사용허가 기간 : 2021.3. ~ 2026.3. (5년)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
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4.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〈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퍸스 현황 사진 〉



〈 컨셉 및 공간구성 〉

 <p>4층</p> <p>함께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공간 참여하는 시민</p>	 <p>3층</p> <p>행복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공간 학습하는 시민</p>	 <p>2층</p> <p>서로 소통하며 자혜가 생겨나는 공간 공감하는 시민</p>	<p>- 강의실 구성 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스마트 강의실(30석) 1실 · 대 강의실(70석) 1실 · 중 강의실(30석) 2실 · 소 강의실(20석) 2실 · 마루강의실 2실 · 중 강의실(30석) 2실 · 영상강의실(30석) 1실 <p>- 특화 공간 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다목적홀, 미래커뮤니티라운지 · 메이커스페이스, 소프트웨어실 · 크리에이터 부스, 공유 사무실 · 자기주도 학습공간(도서실) · 교수연구실 · 소프트웨어실 · 시민소통광장 · 시민지혜마당, 기획전시실 · 개방형 학습공간 · 시민연구실 5실
---	--	---	--

 <p>2층 시민홀</p>	 <p>3층 시민지혜오름 (열린도서공간)</p>	 <p>4층 미래홀</p>
---	---	---

- 사용료 면제대상은 건물과 토지이며, 건물은 복합단지 내 건물 일부로,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총 면적은 $7,211 m^2$ 이고, 건물평가액은 80억원이며, 부지는 $1,387.9 m^2$ 로 부지평가액은 86억 6,327만원으로, 사용료 면제대상의 총 재산평가액은 166억 6,666만원으로,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산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모는 연(年) 1억 6,667만원 수준임.

〈 본 사용료 면제 대상의 재산목록 〉

구 분	소재지	면적(m^2)	기준가격(천원)	감면액(천원)	재산종류	재산관리관	이용현황
토지	강동구 고덕동 210-1	1,387.9	8,663,272	86,632	행정재산	평생교육과	대지
건물	강동구 고덕동 210-1	7,211.5	8,003,390	80,034	행정재산	평생교육과	평생교육시설

* 재산목록별 재산가액과 사용료

- 건물평가액(시가표준액) : 80억 339만원
- 부지평가액(개별공시지가) : 86억 6,327만원
- 재산평가액(건물+부지) : 166억 6,667만원
- 재산평가액에 따른 사용료 : 1억 6,667만원
-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감면액 : 1억 6,667만원

* 본 동의안의 감면대상 건물평가액(시가표준액) : 80억 339만원

	건물(m^2)			건물평가액 (천원)	비고
	계	전용면적	공용면적		
지상 1층	138.21	-	138.21	209,47	시가표준액 (강동구 재산세과)
지상 2층	2,327.95	2,327.95	-	2,649,673	
지상 3층	2,372.68	2,372.68	-	2,571,985	
지상 4층	2,372.68	2,372.68	-	2,571,985	
합계	7,211.52	7,211.52	-	8,003,390	

- ※ 본 동의안의 감면대상 부지평가액(개별공시지가) : 86억 6,327만 1,800원
 - 2020.5.29.기준 개별공시지가 : 6,242,000원
 - 부지면적 : 1,387.9m²
 - 부지평가액 = 부지면적×공시지가 = 1,387.9m²×6,242,000원 = 8,663,271,800원

- ※ 사용료 감면 대상(행정재산)의 재산평정가격 : 166억 6,667만원
 - 본 동의안의 감면대상 건물 평가액 : 80억 339만원
 - 본 동의안의 감면대상 부지 평가액 : 86억 6,327만원
 - 건물 평가액(80억 339만원) + 부지평가액(86억 6,327만원) = 166억 6,667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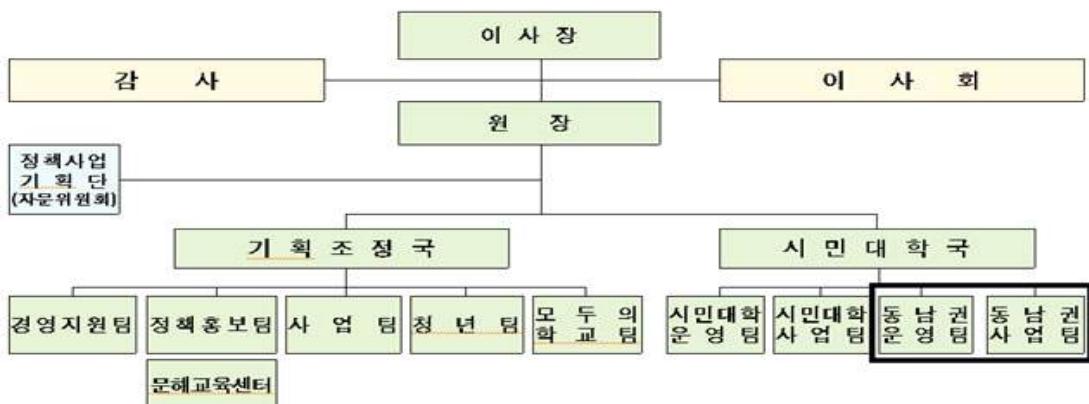
- ※ 연간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: 1억 6,667만원
 -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산정 근거 및 기준 :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
 - ▶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
 - ▶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26조(대부료의 요율)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 6.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
 -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산출 = 1억 6,667만원
 - ▶ 계산식 : 재산평정가격(건물+부지) × 사용요율(10/1,000)
 - ▶ 계산 : $(8,003,090,426\text{원} + 8,663,271,800\text{원}) \times \frac{10}{1,000} = 166,666,622\text{원}$

- ※ 연간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감면액 : 1억 6,667만원

나.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 검토

-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학, 인문학, 문화예술 등의 평생교육과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(이하 '진흥원')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
-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(이하 '동남권캠퍼스')는 진흥원의 시민대학국에서 운영할 예정으로, 동남권 지역(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)의 시민적 요구, 시대적 필요성 등을 반영한 학습기회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평생교육시설로 총 3개층(2~4층)으로 구성하고 있고,
- 총 19명의 인력이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5개의 정규과정(인문학, 시민학, 서울학, 문화예술학, 사회경제학)과 함께 기획강좌, 특화강좌(미래학, 그린미래 등) 등을 3월 임시운영에 이어 4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에 있음.

〈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내 동남권캠퍼스 운영 조직 〉



〈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인력 운영현황 〉

(단위: 명)

구분		동남권운영팀	동남권사업팀
계	19	13	6
정규직	팀장	2	1
	팀원	10	5
기능직	보안	2	-
	미화	5	-

〈 2021년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주요사업 계획안 〉

(단위:천원)

실행단위	사업 내용	소요예산
① 미래학 교육과정 운영	· 미래학 특화과정, 민간연계 시민대학	195,370
② 그린미래과정 운영	· 생활환경학 특화과정, 민간연계 시민대학	79,270
③ 동남권캠퍼스 정규과정 운영	· 5개 학과 정규과정 및 특별강좌	171,380
④ 동남권캠퍼스 자문단 운영	· 특화교육과정 정기자문, 이슈별 수시자문	25,432
⑤ 마니아 클래스 운영	· 마니아활동 시민·단체 지원 및 홍보	38,500
⑥ 시민지혜오름 활성화	· 북 큐레이션 존 운영, 책읽기 소모임	150,000
⑦ 동남권캠퍼스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	·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공간 기획	30,000
⑧ 시민 ⁿ 기획단 운영	· 시민 ⁿ 기획단 조직 및 활동 지원	29,250
⑨ 코로나 평생학습꾸러미 Safe Learn Kit 운영	· 평생학습 챌린지 활동 키트 제작	80,000
⑩ 캠퍼스 통합 홍보 추진	· 온·오프라인 매체 활용 통합 홍보	66,758
⑪ 캠퍼스 개관 및 프로그램 홍보	· 신규 개관 홍보 및 인지도 확산	31,158
※ 동남권캠퍼스 시설 개·보수비	· 안심 캠퍼스(그린존)조성, 시설·장비 수리	221,100
※ 동남권캠퍼스 자산취득비	· 미조성공간 사무기기·사무가구 구입	327,693
※ 동남권캠퍼스 시설운영 공통경비	· 통합 관리비, 통신료 등 기관공통경비	450,311
합 계		1,896,222

〈 2021년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예산집행 계획 〉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예산액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미래(동남권)캠퍼스 운영	1,896	22 계회수립 임시운영	815 교육과정 운영 공간 조성	639 교육과정 운영 공모사업 진행	420 교육과정 운영 평가회

- 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, 비영리사업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무상사용이 필요하며, 평생교육국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각 캠퍼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※ 평생교육진흥원은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며,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, 2021년 4월부터 정상운영을 추진하고 있음.

※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제17조(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)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※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제24조(출연금)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○ 진흥원에게 동남권캠퍼스의 부지와 건물을 사용토록하고,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평생교육국의 세출(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중 동남권캠퍼스 사용료)과 세입(동남권캠퍼스 사용료) 상계가 매년 발생하고, 국세부담(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, 사용료의 10%)이 매년 발생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시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, 예외적인 경우(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보호, 공익사업 추진)와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'에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
- 「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」(이하 「공유재산법」)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수의계약, 감면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※ 「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」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-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동남권캠퍼스의 사용료 감면요건은 ① 서울시가 출연한, ② 비영리 ③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④ 비영리 사업에 한정하여, ⑤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이며,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(중략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- 진흥원의 세입은 대부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, 공법(公法)으로 분류된 법령(평생교육법)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며, 근거 법령과 조례에 따른 운영목적이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, 의회의 동의를 얻기 이전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데 흄결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※ 근거법령에 따른 법인 구분

- 사법(私法) :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이익충돌 시 조정·해결을 목적으로 함.
- 공법(公法) : 공익과 사익 조정, 공권력의 기능, 권한의 확정·제한을 목적으로 함.
- 설립 근거별 법인 구분 : 공법을 설립근거로 한 법인은 공법인, 사업을 설립근거로 한 법인은 사업인으로 구분함.

※ 영리와 비영리 구분

-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영리활동(사업)의 유무가 아닌 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② 의도적·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지 여부임.
이는 법인구분 뿐 아니라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기준으로 적용됨.
- 영리법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, 달성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으로, 설립근거는 「상법」을 따르고 있음.
「민법」제39조(영리법인)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쫓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
-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고, 사업의 공익성이 있어야 하나, 공익성의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, 이에 대한 해석은 이견(광의적 vs 협의적 / 직접적공익 vs 간접적공익 / 공익현재성 vs 공익미래성)이 있음.
「민법」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※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근거

- 「평생교육법」제20조(시 ·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 ① 시 ·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· 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· 운영할 수 있다.
-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제17조(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)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※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동남권캠퍼스(밑줄로 표시)의 사업

-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제18조(사업)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1.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
 2.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 · 운영 및 지원
 3.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

4.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
5.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
6. 학습동아리 육성 · 활동지원
7.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
8.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
9.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
10.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· 운영 지원
11.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
12.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13.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「공유재산법」은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법령은 사용·수익 허가의 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,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
- 사용료 면제목적이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와 함께 수의계약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 · 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· 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 ·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- 본 사용료 면제대상물은 2017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기부 채납으로 형성된 행정재산이고, 평생교육국은 본 행정재산 활용방안으로 동남권캠퍼스 조성계획(2018년)을 수립했으며, 계획의 변경없이 본 재산을 인수하고, 사용·수익 허가와 함께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바, 행정 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.

※ 본 대상부지의 개발 경위

본 대상지 일대(고덕동 210-1번지)는 舊서울승합부지로 불리던 곳으로 1983년부터 버스차고지로 이용되었으며, 2002년 공영차고지로 변경되었고, 2017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용도변경(제2종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) 후 증가한 연면적 중 일부를 기부채납할 계획에 따라 공공기여형 복합단지(주거·문화·체육·공공업무 등)로 건립되었음.

-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를 24개로 한정하고 있으며, 이중 진흥원이 동남권캠퍼스를 사용하는 것은 ‘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’ 경우에 속하는 바, 수의계약 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.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③ 법 제20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.~19. (생략)

20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·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
21. ~ 24. (생략)

- 「공유재산법」은 사용·수익의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, 사용료 면제기간도 5년 이내로 산정하여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나,

*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1조(사용 · 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 · 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
- 평생교육국은 동의안에 사용료 면제기간의 연·월까지만(2021.3.~2026.3.) 명시하여, ①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, ② 의회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사용기간(5년)을 초과(61개월)한 사용료 면제기간을 동의토록 하며, ③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소급 적용(의회의 의결 예상일:2021.3.5., 적용일:2021.3.1.)될 수도 있는 해석이 모호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음.
- 사용·수익 기간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적용되며, 그 사용료 면제기간도 사용·수익 허가기간에 따라 결정되어, 허가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면제기간을 산정하여 위와 같은 모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*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1조(사용 · 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 · 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
* 평생교육국은 본 대상물의 소유권 취득(2020.12.29.) 후 사용·수익을 위한 허가 절차(공유재산심의회, 2021.1.15., 심의결과:적정)를 거친 직후 지체없이 동의안을 제출(2021.2.5.)하는 등 동남권캠퍼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짐.

* 동남권캠퍼스 추진경위

- 2018.07.19. :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조성계획 수립(행정1부시장 방침 제171호)

- 2020.08. : 대상물의 준공 승인
- 2020.08. : 기부채납 가액산정 요청(서울시-강동구)
- 2020.12. : 기부채납 가액산정 통보(강동구-서울시)
- 2020.12.21. :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시설물 인수계획 수립(평생교육과-12964)
- 2020.12.23. :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사용수익허가 신청(평생교육진흥원)
- 2020.12.23. :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계획 수립
- 2020.12.29. : 서울시 소유권 이전 (재산관리관 : 평생교육국)
- 2021.01.15. : 공유재산심의회 (사용수익허가 심의, 심의결과 : 적정)
- 2021.02.05. : 사용료면제 동의안 제출

- 다만, 평생교육국과 진흥원은 지난 해(2020년 4월)부터 지속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1년 동안 개관준비를 진행하였고, 2월 초 보도자료(2021.2.10.)를 통해 동남권캠퍼스의 운영일정(2021.3.9. 임시개방, 2021.4. 정식개관)을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, 동의안의 제출일(2021.2.5.)과 의결일(2021.3.5.)은 확정되어 사용·수익허가 기간 및 사용료 면제기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미확정 정보를 수록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음.
- 의회의 동의는 ‘사용료 면제 여부’에 한정되어 명확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, 의회의 동의는 대상물의 위치·규모·기간, 사용자, 사용목적 등 동의안 심의에 필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착오 없는 종합적인 심의가 요구되는바,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동의안 제출에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김태한
입법조사관	정찬일